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34
----------	------

제출연월일: 2022. 3. 25.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최저보험료와 현행 조례상 지원금액 차이로 지원가능한 세대가 없어 경제적·사회적 위협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기준 변경(안 제3조)

- 현행: 월 1만원 미만
- 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명시(안 제5조)

- 현행: 내용 없음
- 변경: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3호)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예산계장 협의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7885호, 2022. 2. 22.)

라. 입법예고: 2022. 2. 7. ~ 2. 28.(21일간) / 개정조례안 제9조 예산 확보 조문을 삭제하지 말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예산편성권은 구청장 고유 권한이며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반영하지 않았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를 “차상위계층 주민”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노인세대라 함은 주민등록상 만65세”를 ““노인세대”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만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을 “란 구에 거주하고 있는”으로, “3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 세대가 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5.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대상자를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보장받는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험료 지원대상”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며”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으로, “세대로 한다”를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험료 지원 신청)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이후 대상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재신청해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받은 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로, “지사에서 청구”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신청”로, “일괄 지급한다”를 “지급해야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원대상자 관리)”를 “(지원대상자 관리 및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사장은 신청한 계좌에 입금된 보험료를 지원대상자 개인별로 수납처리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험료 수납자 명부를 납부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허위”를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보험료를 환수 하여야”를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지사장으로 부터 환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지사장이 제1항에 따라 반환해야할 보험료를 지정한 기간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노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차상위계층 주민-----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세대라 함은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어르신만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장애인세대”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한부모세대”라 함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또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4. “다자녀세대”라 함은 18세 미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세대”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만 65세-----. 2.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4. -----란 구에 거주하고

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단,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이나 타 기관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 1. ~ 4. (생략)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 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

있는 2명 -----

5.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대상을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보장받는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 다른 -----.

-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보험료 지원 신청)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
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전까지 “별
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
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
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지사에서 통보된 자료를 근
거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
원 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
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
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 대
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에서 청구
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한 이후 대상자 변동이 있을 경
우에는 구청장에게 재신청해야
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받은 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보험료 지급) ----- 제5조

-----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신청 ----- 지급해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지정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관리 및 정산)

① ----- 제5조-----
-----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관리해야 ----.

② 지사장은 신청한 계좌에 입금된 보험료를 지원대상자 개인별로 수납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험료 수납자 명부를 납부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환수 등) ① ----- 지원대상자가 허위 -----
----- 경우 납부한 보험
료를 지사장으로부터 환수해야
-----.

② 구청장은 지사장이 제1항에 따라 반환해야할 보험료를 지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삭 제>

<삭 제>

근 거 법 규

□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3호)

제1조(목적)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연간 비용 추계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비 고
	1월~6월	7월~12월					
최저보험료	1만원 미만	11,500원	12,020원	12,550원	13,110원	13,690원	
세대수(월)	25	105	200	220	240	260	
총비용(천원)	1,500	7,560	28,848	33,132	37,757	42,713	
		9,060					

- 개정조례안은 연평균 비용이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3. 작성자

- 소 속: 노인장애인과
- 직 급: 지방사회복지서기
- 성 명: 김 현아
- 연락처: (052)290-3583

<참고자료>

[별지 제1호서식]

【현 행】

()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통보 명단(제4조제2항 관련)

(_____ 동)

연번	<u>지 원 대 상 자</u> (세대주)			세대원수	<u>국민건강 보 험 료</u> (단위:원)	비 고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계						

【개정안】

()월 보험료 지원대상자 신청 명단

연번	<u>신 청 자</u> (세대주)			세대원수	<u>보 험 료</u> (단위:원)	비 고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계						

[별지 제2호서식]

【현 행】

()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제7조 관련)

() 동)

연번	지 원 대 상 자(세대주)			세대원수	<u>국민건강 보 험 료</u> (단위:원)	비 고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개정안】

()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명단

연번	지 원 대 상 자(세대주)			세대원수	<u>보 험 료</u> (단위:원)	비 고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u>계</u>						